

#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7. .  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경관사업 추진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,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함을 규정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함 (안 제8조의2)
- 나.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함  
(안 제16조의2)
- 다.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을  
규정 함 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경관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(2010. 4.13 ~ 5 . 5 )결과 : 의견 없음

조 례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10조(위탁의해지) ① (생략)</p> <p>제11조(위탁운영비 등) ① (생략)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③ (생략)          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 (생략).          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준용) (생략)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에게 위탁할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li> <li>3.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</li> <li>4.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</li> <li>5.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</li> <li>6.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전방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li> </ol> <p>제11조(위탁의해지) (안 제10조와 같음)</p> <p>제12조(위탁운영비 등) ①(안 제11와 같음)          ② (안 제11와 같음)          ③ (안 제11와 같음)          ④ (안 제11와 같음)</p> <p>제13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(안 제12조와 같음)          ② (안 제12조와 같음)</p> <p>제14조(준용)(안 제13조와 같음)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(안 제14조와 같음)</p>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경관위원회설치) 법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 
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 
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경관법

제15조 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제16조 (경관협정의 체결)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(이하 "경관협정"이라 한다)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.

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(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 법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경관위원회(이하 "경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7조(경관위원회의 설치) 법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.</p>
<p>제18조(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20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제1호외 지역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4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,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</li> <li>3. ~ 5. (생략)</li> <li>6.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</li> </ol>	<p>제20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&lt;삭 제&gt;</li> <li>3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경관계획의 내용)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~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3. <u>공공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     4. <u>건축물, 옥외광고물, 가로시설물 등의 경관유도지침</u></p>	<p>제6조(경관계획의 내용)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3. <u>공공디자인계획에 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     4. <u>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</u>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가. <u>경관관리 가이드라인</u>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나. <u>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(공간, 건축물, 가로시설물, 시각매체, 옥외광고물 등)</u></p>
<p>제8조(경관사업의 대상)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6. <u>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8조(경관사업의 대상)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6. <u>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</u></p>
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8조의 2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 <u>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「충주시 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
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16조의 2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 <u>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/u></p>

3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4. 기타 참고자료 : 근거법령(식품위생법 제89조)

덧붙임: 1.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
2. 신구조문대비표  
3. 근거법령(식품위생법 제89조)